

제43호

금융투자업계 녹취·속려제도 도입

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, 고령자 및 부적합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되고, 속려기간(2영업일)이 부여됩니다.

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?

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, 투자손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

파생결합증권

파생상품

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, 투자일임, 금전신탁계약

최대원금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% 초과

다만 거래소 등에 상장된 상품을 직접 매매하거나,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등은 제외

첨약여부에 대한 속려기간(2영업일)을 부여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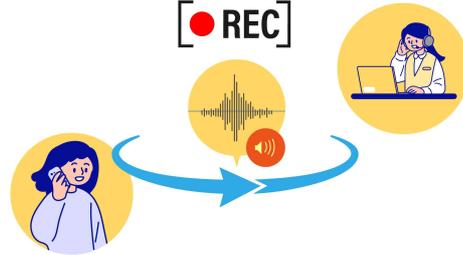
T	첨약일	상품 등에 대한 계약 체결
T+1	속려기간	회사가 투자 위험, 원금손실 가능성,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에 대해 투자자 안내 속려기간 중 청약을 집행하는 행위 금지
T+2		
T+3	첨약의사 확인!	투자자가 서명, 기명날인, 녹취, 전자우편, 우편, ARS 등으로 청약의 의사 확정표시 청약 확정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 집행하는 행위 금지

첨약의사를 표시할 경우 → 계약체결 완료!

첨약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→ 계약 미체결 및 대금 반환

판매·계약 체결과정이 녹취됩니다.

금융투자회사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/일임/신탁을 판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고, 투자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녹취파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
65세 이상 고령자·부적합투자자에 대한 녹취·속려제도

65세 이상 고령자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의 경우에도 녹취·속려제도가 적용됩니다.

※ 다만, 거래소 등에 상장·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 제외



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예시

- ① 고난도 금투상품·일임계약·금전신탁계약
- ② 파생결합증권
- ③ 파생결합증권에 50% 이상 투자하는 펀드
- ④ 파생상품
- ⑤ 파생상품펀드
- ⑥ 초진투자분증권
- ⑦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수익증권
- ⑧ ①-⑦에 준용하는 신탁·일임계약